제108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[2021. 10. 22.(금)]

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10. 22.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제출자: 2021. 10. 15.

전홍표·김태웅·백승규·심영석·이천수·백태현
공창섭·김상찬·박성원·김상현·한은정·박선애
이헌순·문순규·조영명·최희정·박현재·박춘덕
이우완·김경희·이종화 의원(21명)

나. 회 부 일 자: 2021. 10. 19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 제108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1.10.22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전홍표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❍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, 시민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창원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❍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~ 제3조)

❍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❍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~ 제7조)

❍ 학교환경교육의 지원,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8조 및 제9조)

❍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0조 및 제11조)

❍ 의견의 청취, 재정지원,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 ~ 제14조)

다. 참고사항

❍ 관계 법령: 의안번호 835, P9 ~ P1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박선희)

□ 제정 배경

❍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면서 환경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창원시의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자연과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안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책무)는

❍ 본 조례 시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하고

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임.

나. 안 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는

○ 위임조례는 아니 지만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5조(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)을 유사하게 5년 주기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다. 안 제5조(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~ 제7조(위원의 해촉)은

○ 위원회의 설치 근거, 기능, 구성 규모, 위원 임기, 해촉 사유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라. 안 제8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, 제9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는

○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사회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.

마. 안 제10조(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) 및 제11조(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)는

○ 환경학교센터의 설치 근거와 기능,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
바. 안 제12조(의견의 청취) ~ 제14조(포상)는

○ 환경교육계획 수립시 의견 수렴 등의 근거 마련과 환경교육센터 등의 재정지원 근거마련과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
□ 종합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,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,

○ 현재 우리시는 학교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시 자체의 법적 기반과 제도를 반영한 자치법규가 없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교육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인바,

○ 환경교육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진흥·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고, 나아가 보다 성숙한 환경의식을 가진 시민을 안정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, 금회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